



『技術士法에 의한 登錄制와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에 의한 申告制에 關하여』

(A Professional Engineering Service Registration
by P.E., law and Submission by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law with Comparison of main articles of each laws)

金 岫 根*
Kim, Suen Guen

主要内容目次

- | | |
|-----------------------------|--------------------|
| 1. 머리말 | 4. 申告制(屈出制)의 一般의性格 |
| 2. 技術士法과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の 對照相馳點 | 5. 맺는말 |
| 3. 登錄制의 法的性格 | 6.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

1. 머리말

이 原稿를 쓰기위한 資料는 所謂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立法豫告以前에 準備되어 있었으나, 技術士法立法推進에 交障을 줄가봐, 그것을 保留抑制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技術士法案이 國會에서 92. 11. 4. 通過한 時點에서(制定公布가 法律第 4500 號로 92. 11. 25 日) 正堂堂하게 所信을 披瀝코져 한다.

더욱이 會員여러분께서 熟知하시기를 希望하는 것은 科技處立法豫告時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은 違憲性立法이라고 指摘하여 科技處에 意見書를 提出한 單一人이라는 것은 會員同志여러분이 銘心하시기를 願합니다.(R-6 要

參照)

따라서 登錄制는 法定資格者를 위한 國內實定法上 當然한 것이고,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은 市場開發壓力에 便乘해서 마치 우리의 技術士職務(法制化된)를 엔지니어링 技術 或은 活動이라는 名稱으로 開放化한다는 名目美名化에 西歐先進國에도 昨今 없었던 稀貴怪想한 立法案이 國會에서 同時通過되었다는 事實은 立法理論은 工夫한 法律家는 勿論, 15年余間 法律工夫를 한 筆者로서는 后進性 違憲立法이라 概嘆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登錄制와 申告制는 立法上 어떠한 事業(案)에 適用하는지도 잘 모르고 立法案을 作成한 用協側에 舊蘇聯崩壞와 같은 哀戀(애련)의 情을 느끼고 있고, 母法(技術士法)과 孫子法(엔

* 土木(港灣 및 海岸技術士). 韓進開發公社技術顧問.

(社)韓國技術士會常任理事, 技術士法立法推進委員會先任幹事

• R-2 要參照 p.874~887 面의 日語文抄譯轉載

• 日帝時代 欠席(勤)屈·盜難屆가, 요즘은 犯罪申告等으로 바뀌었다.

• 表-8 要參照

지니어링技術振興法)이 同時制定公布되는 웃기는 일도 보게되었다.

2. 技術士法과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の 對照相馳點(要約)

技術士法은 技術士職務(技術用役業務)에 關한 母法上的 元祖이다. 즉, 法律第1442號로 1963. 11. 11. 制定公布되었었다가 1976. 12. 31. 法律第2994號로 廢止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表-2. (用協)兩法案 對比條項表(SGK)

(A)技術用役育成法(法第2474號)	(B)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1條(目的) 이法은 國內技術用役業體의 健全한 育成과 國內技術水準의 向上을 圖謀함으로써 國民經濟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 ※이法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技術集約化를 促進하여 製造業등 關聯産業과의 均衡發展을 圖謀하고, 科學技術 分野에서 研究開發結果의 實用化를 促進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第2條(定義) “※判異하다”
第3條(登錄)	第3條(支援施策의 請究)
第3條의2(用役業者의 缺格事由)	第4條(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
第4條(用役의 遂行)	第5條(政府등에 依한 엔지니어링事業의 推進)
第4條의2(用役受注의 限度)	第6條(核心등 엔지니어링技術의 開發·支援등)
第4條의3(用役對價의 基準)	第7條(엔지니어링技術導入計劃의 申告등)
第4條의4(産業設備用役의 育成)	第8條(엔지니어링技術導入契約의 申告등)
第5條(金融支援)	第9條(엔지니어링技術輸出計劃의 申告등)
第6條(用役業의 登錄取消등)	第10條(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基準)
第6條의2(登錄의 取消處分등을 받은用役業者의 用役業務)	第11條(支援排除)
第7條(資料提出 및 實態調査등)	第12條(韓國엔지니어링振興協會의 設立등)
第8條(秘密漏泄禁止)	第13條(엔지니어링共濟組合의 設立등)
第9, 10, 11條(削除)	第14條(法人格)
第12條(用役協會의 設立)	第15條(定款의 變更)
第12條의2(權限의 委託)	第16條(共濟規程)
第13條(罰則)	第17條(類似名稱의 提出)
第14條(罰則)	第18條(靑類의 提出)
第15條(過怠料)	第19條(報告·檢査등)
第16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0條(行政措置)
第17條(施行令)/附則	第21條(委任規定)
	第22條(다른 法律의 準用)
	第23條(資料提出등)
	第24條(成果品에의 署名捺印)
	第25條(秘密漏泄禁止)
	第26條(權限의 委託)
	第27條(罰則)
	第28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擬制)
	第29條(兩罰規定)
	第30條(過怠料)
	附則 第1條~第9條

表-3. (A)와 (B)法間의 對照相馳點要約表(SGK)

(A) (法律第4500號 1992. 11. 25.制定公布)	(B)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의 焦點(法律第4501號 1992. 11.25制定公布)	備 考
<p>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 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的 應用能力을 必要로 하는 事項에 대하여 計劃·研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監理·評價·診斷·事業管理 技術判斷·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p> <p>② 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p> <p>③ 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專門的 應用能力을 必要로 하는 事項의 種類 및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註記: ① 15個 職務中 (B)보다 特異한 것은 施工·技術判斷·技術仲裁等이다. ② 用語의 差異 또는 計劃 ③ 工事의 施工은 購買·調達부터 始作하므로 (B)의 두 用語를 內包한다고 본다.</p> <p>第5條(技術士活用施策) ① 政府는 技術士의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知識이 産業技術發展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內容이 包含된 技術士活用施策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p> <p>1. 技術士의 長·短期 需給展望 및 計劃 2. 技術士의 活用을 獎勵하기 위한 施策 3. 技術士의 育성과 技術能力의 向上을 위한 施策 4. 其他 技術士職務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活用施策의 樹立 및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註釋: ① 技術士의 母法으로서 第3條와 第5條를 根據로하여 實定法規內에서 無限한 活用施策을 同施行令에 條文化할 수 있다고 본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엔지니어링活動”이라 함은 科學技術의 知識을 應用하여 사업 및 施設物에 관한 企劃·妥當性檢査·設計·分析·購買·調達·試驗·감리·試運轉·評價·諮問·指導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活動과 그 活動에 대한 事業管理를 말한다.(以下 省略함)</p> <p>註記: ① 13個 職務中(A)보다 判異한 것은 妥當性調査·購買·調達等이다. ② ●●●企劃● ③ 플랜트·엔지니어링의 定義와 거의 같다.</p> <p>第3條(支援施策의 강구) ① 政府는 엔지니어링技術의 振興을 위한 與件의 造成에 必要한 支援施策을 强구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策을 强구함에 있어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의 雇傭을 擴大할 수 있도록 勸獎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强구할 수 있다. ③ 科學技術處長官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대상으로 하는 支援施策의 强구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 調査를 실시하고, 關係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支援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수 있다.</p> <p>註釋: ① B法은 技術士法第5條를 活用하는 下級法임을 立證하는 條文이 第3條一部分이다. ② 過去,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附表에서 母法의 根據없이 使用했었던 認定技術士·高級技術者라는 非法定用語를 이法에서 條文化하는 代身に 第3條一部分이 登場하여 窮餘之策끝에 條文化한 印象이 매우 짙은 듯하다. (SGK)</p>	

(A) (法律第 4500 號 1992. 11. 25. 制定公布)	(B)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の 焦點(法律第 4501 號 1992. 11.25 制定公布)	備 考
<p>第 6 條(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 ① 開業하기 위하여 技術士事務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技術士는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p>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이 된 경우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은 그 登錄事實을 國家技術資格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該當 技術士의 關聯主務部長官(以下 “主務部長官” 이라 한다)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p>③ 技術士는 2 以上の 技術士事務所를 開設할 수 없다.</p> <p>④ 技術士事務所의 登錄基準·登錄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註釋: ① 實定法 30 余種에 單한 法定資格職(業)務는 登錄하게 되어있다(表 4 要參照)</p> <p>② 技術士職務는 租稅減免規制法 對象이다.</p> <p>參照法規</p> <p>租稅減免規制法 第 20 條(技術用役事業에 對한 所得控除)와 同令第 17 條(技術用役事業의 範圍)</p> <p>註記: 科學技術處公告 第 91-29 號, 1991. 5. 29. 技術士法制定法律案立法豫告에는 第 6 條(技術士共濟組合)가 있으나 92. 1. 7. 法制處接受案에는 削除된바 있다</p>	<p>第 4 條(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 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 2 號의 경우에는 그 部署가 속한 企業이 申告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엔지니어링活動을 주된 營業의 手段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者 2. 엔지니어링活動을 전담하기 위한 企業내의 專膽部署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部署 <p>註釋: 1) 法的資格을 가진 A 法の 技術士職務와 엔지니어링活動이라 定義化한 (B) 法の 第 2 條와 對比時 (B) 法 第 4 條의 申告는 違法(憲)이라 할 수 있다. 즉, 違憲訴訟對象이 될수 있는 것이다.</p> <p>2) 엔지니어링活動으로 條文化되므로서 營業手段에 對한 諸公課稅를 納付하여야 한다.</p> <p>第 13 條(엔지니어링共濟組合의 設立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自主的인 經濟活動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保證과 資金의 融資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 엔지니어링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組合는 다음 각號의 事業을 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活動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保證 및 資金의 融資 2.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技術輸出에 따른 主去來銀行의 設定에 관한 保證 3. 組合員이 엔지니어링活動代價로 받은 어음의 割引 4.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活動에 필요한 機資材의 구매알선(以下省略) <p>※ 政府案에는 ③項이 있었다.</p>	<p>(A) 登錄制와 (B) 申告制의 差異點은 行政學의 ABC 로 儼然히 區別된다. 즉, 申告制는 事實事前的 및 事實把握型이므로 申告上 基準이 있을 수 없고 또 必要없다. 政府最終案으로 國會提出(92.7.9)時에는 (B) 法 第 13 條 ②項이 있었으나, 國會審議過程에서 削除된바 있다. 즉 「② 科學技術處長官이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p> <p>註釋: 이것은 科技處가 1990.3.30. 認可한(社)技術用役共濟組合을 民法第 32 條에 의거하여 設立했던바 있으나, 이것은 儼然히 保險法 第 5 條違反 罪를 犯行한 것을 自認하는 法條文이었던 것이다.</p> <p>要參照: 技術士會誌 第 24 卷 第 2 號 (1991. 1. 4) 「(社) 技術用役共濟組合 設立은 違法이다.」 72~83 面.</p>

表 4. 國內實定法中 各種 資格이 定義化된 法定用語表(追補한것, 技術士會誌 第25卷 第3號의 8面)

No.	法 名	法號	制定公布日	法定資格用語	該當法條文
1	建築士法	1536	1963. 12.16	建築士, 建築士補	第1條, 第1, 2項
2	國土利用管理法	2408	1972. 12.30	土地評價士*	第29條의 2(土地評價士의 免許)
3	測量法	938	1961. 12.31	測地技術士, 測地技士 1, 2級	第32條(測量技術者의 免許)
4	建設技術管理法	3934	1987. 10.24	建設技術者	第2條 第5項
5	建設業法	477	1958. 3.11 (14次 改正)	建設技術者	第2條 第9項(12次 改正) (同施行令 第3條의 別表-2에 建設技術者의 種類가 條文化 되어 있다.)
6	公認勞務士法	3771	1984. 12.31	公認勞務士	第3條(資格)
7	公認會計士	1797	1966. 7.15	公認會計士	第2條(資格)
8	公證人法	723	1961. 9.23	公證人	第2條(公證人의 定義)
9	關稅法	1976	1967. 11.29	關稅士	第156條(關稅士의 職務)및 第157條(關稅士의 資格)
10	辨理士法	864	1961. 12.23	辨理士	第2條(業務) 및 第3條(資格)
11	辯護士法	3594	1982. 12.31	辯護士	第3條(職務) 및 第4條(辯護士의 資格)
12	法務士 (司法書士法)	1333	1963. 4.25	法務士	第4條(資格)
13	稅務士法	712	1961. 9. 9	稅務士	第2條(稅務士의 職務) 및 第3條(稅務士의 資格)
14	藥師法	1491	1963. 12.13	藥師	第2條 第2項(定義)및 第3條(資格과 免許)
15	醫療法	2533	1973. 2.16	醫療人(5種類)	第2條(醫療人)및 第5-1條(資格과 免許)
16	社會福祉事業法	2191	1970. 1. 1	社會福祉士	第2條(定義) 및 第5條(資格)
17	導船法	3908	1986. 12.31	導船士	第2條(定義)및 第4條(免許)
18	海難審判法	2306	1971. 1.22	海士補佐人	第27條~第29條
19	船舶職員法	3715	1983. 12.31	船舶職員과 海技士	第2條(定義)
20	不動產仲介法	3676	1983. 12.30	公認仲介士	第2條(定義)
21	航空法	591	1961. 3. 7	航空從事者	第2條(定義)및 第23條(資格)
22	原子力法	3549	1982. 4. 1	原子爐操縱責任者	第26條~第28條
23	住宅建設促進法	3998	1987. 12. 4改正	住宅管理士	第39條의 3(住宅管理士의 業務)
24	電氣工事業法	3294	1980. 12.24改正	電氣技術者	第2條 第4項(定義)
25	電氣通信工事業法	3950	1987. 11.28改正	通信技術者	第2條 第5項(定義)
26	消防法	3675	1983. 12.30改正	消防隊員	第2條 第7項(定義)
27	教育法	3675	1988. 4. 6改正	教育長	第40條(管掌事務)및 第73條(教員의 定義)
28	電波管理法	924	1961. 12.30	無線從事者	第31條 및 第32條(無線從事者의 資格)
29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1975. 12.31.(法 第2663號)	公認鑑定士	
30	食品衛生法	3823	1986. 5.10	調理士 및 營養士	第34~41條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1989. 4.1. 法第4120號)第13條(鑑定評價士의 職務)와 附則 第6條에 의거하여 土地評價士는 消滅되고 鑑定評價士로 代置되다.

편 技術用役育成法은 法律第2474號로 1973. 2. 5. 制定公布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不遠間 廢法直前に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技術用役育成法改訂法律로서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이 技術士法보다 한발 늦게 法律第4501號로 同日字 制定公布되었다. 그러나 이法은 嚴密히 따져 볼때 立法理論上 改正아닌 新立法이라고 主張하는 바이다. 즉, 法의 目的과 定義가 舊法과 新法 間에 判異하다는 것이다. (表-2 要參照)

A와 B의 두法間의 相馳對照點은 表-3과 같다.

《新立法이라고 主張하는 事由》

1. A, B兩法 第1條目的이 完全히 다르다.
2. 第2條(定義)은 目的과 함께 完全히 다르다.
3. A, B兩法의 本法中 同一條項은 4個條項 즉, A法第4條의 3과 B法의 第10條, A法第7條과 B法第23條, A法第8條와 B法第25條, A法第12條와 B法第12條等이므로 이것은 完全한 新立法이다.
4. B法第4條의 未洽된 條項으로는 “申告上의 欠格事由”가 없고, 더욱이 技術仲裁에 回附할 紛爭解決(plant 契約締結上의)條項等이 없고, 合當치 못한 用語로서 “主體”가 立法上用語로 쓰여졌다.
5. B法第13條(엔지니어링共濟組合의 設立등) “②項…設立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머리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와 附則 第6條(社團法人技術用役共濟組合에 관한 經過措置)①…民法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等.

註記: 이것은 保險法第5條의 違反임을 自認하는 條項이다.

3. 登錄制*

3.1. 登錄制의 法的性格

行政手段의 하나로서 登錄制가 있다. 「登錄

이라함은 原來, 一定한 事實 또는 法律關係를 認識함에 있어서 그 表示가 되는 公證行爲의 性質을 갖는 것으로서, 行政官廳에서 登錄을 受理하느냐, 拒否하느냐에 대해서 裁量의 余地가 없는 것이 原則이다.」登錄은 原來, 公證行爲로서 論議되어 왔으나, 其後 立法上의 取扱이나 行政實務運用過程에서 許可制와의 關聯性이 濃厚하게 지켜져 왔다.

「公證은 行政의 各種區域에서 其例가 許多하다. 其中 가장 顯著한 것은 各種登錄簿, 登錄原簿, 選舉人名簿, 台帳, 議事錄과 決議錄等 公簿에 登錄하는 行爲이다. 法律은 司法權의 行爲로서 施行되는 경우에는 登記라고 稱하고, 行政權行爲로서 施行되는 경우에는 登錄이라고 稱하고 있기는 하나, 그 行爲의 性質로서 보아 全然 同一한 것이다.」또, 「公證은 特定한 法律事實 또는 法律關係의 存在를 公明正大하게 公的으로 證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를 말하며, 確認이 法律上의 紛爭 또는 疑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判斷하는 行爲인데 대하여, 公證은 紛爭 또는 疑惑이 없는 것으로 推測되어지는 事項 그리고 이미 確認되어진 事項에 관해서 公的인 證據力을 附與하기위한 行爲인 것이다. 效果意思의 表示가 아니라는 것이 確認되, 單只 判斷의 表示가 아니고 認識의 表示인 것이다.」

問題는 公證行爲의 法的效力인데, 이點에 관해서는 「公證行爲의 直接效果는 그 證明한 事實이 公的인 證據力이 生긴데 있고, 그 證據力에 따라서, 法律이 어떠한 效果를 여기에 連繫시키는가 하는 것은 各 경우에 관해서(제各其) 法律이 定하는데 依存한다.」그러나 「모든 公證은 創設的效力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單只, 既存事實을 證明하는데 그치므로해서, 反證에 의해 이것을 轉覆할수 있게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單只, 反證이 있을때까지 그 證明한 事實이 恒常 眞實이라는 것으로 推測(定)되어진다.」

그리고, 法律이 公證行爲에 附與한 法效果에 相馳한데 着眼해서, 公證行爲에는 다음 네(4)

가지 代表的形式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즉, (i) 權利行事的 要件으로 되어 있는 것(選舉人名簿에의 登錄), (ii) 權利의 對抗要件으로 되어 있는 것(不動產登記簿에의 登記), (iii) 權利成立의 要件으로 되어 있는 것(鑛業權의 鑛業原簿에의 登錄), 單只 (iv) 公的인 證據力을 發生하는데 그치는 것(議事錄, 決議錄, 領收證書)等 네가지다.

註記: 權利行使의 要件과 權利成立의 要件이 條文化된 技術士法에 의한 技術士職務(A法 第3條)가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으로 法的遂行케되어 있다는 것을 會員各者는 認知하여야 한다.

現在 國內에서는 制度가 없거나, 或은 申告制로 되어 있다가 法律行爲의 行政行爲로서만 行政指導가 不可能해 지자 登錄制로 바뀐 營業 및 其他業種에 關해 다음表-5 처럼 그 實事例를 몇가지만 整理하여 보았다.

物議가 많았던 (日本) 電氣通信事業規制事例: 電氣通信事業法(1984. 12. 25. 法律第86號)은 다음과 같이 表-6 처럼 分類하여 제各其의 事

表 5. 申告制에서 登錄制로 바뀐 事例表(SGK)

業務內容	備考	根據資料
1 理髮 및 美容	퇴폐營業抑制을 위해 (92年度)	理髮時確認 函
2 韓牛飼肉	農林水産部가 UR 對 備 및 價格暴落防止 및 支援金 支給을 위해	조선일보, 92. 12.6.의 7 面記事
3 特許登錄表示制	特許廳統一規格등 93 年上半期實施推進	韓國經濟新聞 92. 12.9.의 15 面記事
4 컴퓨터프로그램 登錄*	92. 11.28.現在 壹万件 突破<不法複製防止를 위해>	電子新聞 92. 11.30 一面記事
5 銀行設立은 認可制에서 登錄制로 改革案마련	經濟力集中緩和「法人資本主義推進(政府當局)」	中央日報 92. 11. 23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1986. 12. 31. 法第3920號) 第 21條(프로그램의 登錄)

表 6. (日本) 電氣通信事業의 分類와 規制手段

第一種電氣通信事業	許可
〈電氣通信回線을 自體設置事業施行者〉	(9條)
第二種電氣通信事業	登錄
特別第二種電氣通信事業	不特定額客相對로 서어비스提供施行者
政令에서 定하는 規模以上의 것	(24條)
一般第二種電氣通信事業	届出(申告)
〈第二種電氣通信事業으로서, 特別第二種 線은 賃 以外의 것〉	(22條)
無規制의 電氣通信事業	借해서
事業施行者	〈許可: 登錄·申告(届出)等不心要. 株式情 報提供·給與計算데이터處理 서어비스等〉

業形態에 相應시켜서 規制手段을 區分하고 있다. 이表에서 보다시피 電氣通信事業形態나 그 規模에 따라서 規制手法을 달리하고 있다.

3.2. 登錄制와 行政手法

實定法上 「登錄」으로 하게 된 경우에 理論上 두가지 型式이 있는데 대하여 明確하게 다음과 같이 해둘 必要가 있다.

「登錄」의 法的性格에 의한 分類

公證行爲로서의 「登錄」=「本質的登錄」

許可制로서의 「登錄」=「許可的登錄」

이와같은 分類는, 實定法이 定하는 關聯條項의 法的性格에 着眼해서 分類한 것이다. 또, 「登錄制」의 法的效果에 着眼해서 類型化하면 다음 表-7과 같이 分類가 可能할 것이다.

通常的으로, 「登錄制」가 採用되고 있는 경우에, 「法律事實 惑은 法律關係存在의 公的證明」을 施行하는 點에서는 共通性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以外의 法的效果는, 「登錄制」를 定한 根據法令에 의해 多樣하다. 그래서 法令이 어떠한 內容의 法的效果를 附與하느냐에 따라서, 「登錄制」를 分類한 것이 表-7과 같다.

型式 1~4까지의 「登錄制」은 通常, 典型的인 登錄制로서 「公證行爲」의 範疇에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型式의

表 7. 「登録」의 法的效果에 의한 分類表(美濃部方式)

	〈型式〉	〈具體的事例〉
「登録」의 法的效果에 의한 分類	權利行使要件型(型式-1)*	……選舉人名簿에의 登録·住民登録
	權利成立要件型(型式-2)*	……鑛業原簿에의 登録
	權利對抗要件型(型式-3)	……不動產登記簿에의 登記
	事實把握·證明型(型式-4)	……設備·機械 등의 登録(織機·重機·船舶 등의 登録)
	營業規制型(型式-5)**	……貸金業·特別第二種電氣通信事業

※※ 其他, (日本)建築士法5條, 宅地建物取引業法18條, 證券取引法62條, 가스事業法39條의 7, 39條의 13의2, 자갈(砂利)採取法3條, 택시業務通正化臨時措置法3條以下等이다.

※ 註釋: 우리의 技術士法(法第4500號, 1992, 11.25. 制定公布)은 型式-1과 2가 合친 것으로 본다. (SGK)

「登録制」는 「公證行爲」로서 基本的으로는 論議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型式-5의 「登録制」은, 「公證行爲」로서 一律으로 言及할수가 없다. 根據法令의 틀가짐, 그 附與하고 있는 法效果에 着眼해서 한층더 다음의 두가지 分類로 論하는 것이 便利하고 有效하다고 생각된다.

- 營業規制型
 - ┌ 公證行爲로서의 登録에 의한 營業規制(型式-5.1.)
 - └ 許可的登錄行爲에 의한 營業規制(型式-5.2)

登録制가 採用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公證行爲로서의 登録制이거나, 許可的性質을 갖는 登録制이거나, 어느것이나, 營業規制를 위해 行政手段으로서 쓰이고 있는 以上, 機能적으로는 營業規制型的 登録制임에는 不變하다. 단지, 實定法이 登録制를 用語로서 쓰이고 있어도, 이제까지 論述한바와 같이 그 法的性格, 特히 그 法的效果는 반드시 同一하지가 않다.

4. 申告制(屈出制*)의 一般的性格

4.1. 申告制의 세가지 型式

「受理行爲라함은 他人의 行爲를 有效한 行爲로서 領受하는 行爲를 말한다.」라고 되고, 「受理行爲에 의해서 어떠한 效果가 생기는 것인가는 各경우에 관해서, 法律이 定한곳에 있다.」라고 理解되어 있다. 이와같은 受理行爲의 性格에서, 婚姻申告인 경우, 그 申告로서 法的으로 有效하다고 보여지는 婚姻이 成立하고, 夫婦間에 誕生한 兒孩(아해)에 대해서 出生申告을 내면 嫡出子로서 法的親子關係가 發生한다.

한편, 한 營業이 申告制에 묶여 있으면 申告만 하면 該當營業을 適法으로 營爲할수 있게 되고, 工場施設의 設置에 관해, 法令에 의해 申告制*가 採用되고 있는 경우에(大氣汚染防止法6條(日本). 단, 上乘條例가 認定되어 있으므로 (地方)縣水準의 公害防止條例에 의한 規制로는 許可制로 되어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工場施設의 設置申告을 提出해서 受領되면 適法으로 工場을 稼動할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受理行爲의 이와같은 法的效果를 前提로 해서, 受理行爲를 經濟活動의 規制對象으로 採用했을 경우에, 申告制는 經濟活動의 事前책(調査)의 役割을 遂行하게 되는 것이다.(表 8A와 B 要參照)

그러나, 問題가 되는 것은 事前책의 機能은 許可制에서도 遂行할수 있으므로, 왜 許可制를 採用하지 않고, 申告制를 採用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同一한 事前책 일지라도 許可制에 의한 事前책은 實質的事前책에 力點이 置重하여 있는데 대하여, 申告制의 事前책機能은 形式的인 것에 그치고, 問題가 發生時 卽刻的으로 對應할수 있도록, 어느곳에 어떠한 工場施設이 存在하고 있는가등을 事전에 行政上 把握하기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施設이 어느곳에 設置되어 있는가를 行政當局이 事전에 把握하여, 事故가 發生했을 것 같은 경우에 類似한 施設에 대하여 迅速하

表 8A-申告에 관한 國內實定法規條項表(SGK)

	法名稱·制定公布 舊法律號數(無順)	關聯條項(母法上的)	備考
1	獨占規制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1980. 12.31./ 第3320號)	第8條(企業結合의 申告)	
2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法律 (1984. 12. 31./ 第3779號)	第22條(違反行爲의 申告등)	
3	外資導入法(1983.12.31./ 第3691號)	第8條(外國人投資의 申告)	
4	統計法(1975.12.31 第2799號)	第4條(申告)	
5	民法(1958. 2.22. 第471號)	第836條(結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第881條(入養申告의 審査) 第882條(外國에서의 入養申告)	
6	外國人土地法(1961. 9.18 第718號) 外國人土地法施行令(1987. 8.14 大統領令 第12229號)	第7條(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	
7	戶籍法(1960. 1. 1. 第535號 6次改訂)	第4章 申告 第25條(申告의 場所)~第65條(...)	
8	婚姻申告特例法(1968. 12.31. 第2067號)	第2條(婚姻申告) 第4條(申告의 效力)	
9	國民年金法(1986. 12.31. 第3902號)	第19條(申告) 第20條(申告人에 대한 通知등)	
10	勞動組合法(1963. 4.17. 第1329號) (7次改訂)	第15條(申告證) 第13條(.....設立申告...)	
11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1980. 12.31. 第 3319號)	第7條(許可의 制限) 第8條(廢業申告등)	禮式葬儀業을 申告制로 改正 推進(93. 1. 9.京 鄉新聞)
12	騒音·振動規制法(1990.8.1. 第4259號)	第13條(設置完了의 申告) 第25條(特定工事의 事前申告)	
13	水質環境保全法(1990. 8.1. 第4260號)	第14條(設置完了의 申告)	
14	有害化學物質管理法(1990.8.1.第4261號)	第14條(廢業등의 申告)	
15	海洋汚染防止法(1991. 3.8. 第4365號)	第19條(變更申告등)	
16	廢棄物 管理法(1991. 3.8. 第4363號) (以下未完)	第31條(廢棄物의 再活申告등) 第42條(休業·廢業등의 申告)	附則 2個條에도 申告條項이 있다.

表 8(B) 認可制에서 申告制로 變更試圖事例表
(SGK)

- 外資導入法施行令改正案마련(財務部)[※]
業種: 都賣業과 中小企業固有業種等(外國企業)은
申告制로 轉換.
: 其他, 70余個業種은 認可制.

(綜合貿易業·一部小賣業·觀光호텔業等)

- 註記: 法定資格證所要業種은 認可制에서 申告制
로된 對象에 하나도 없다.

※ 出處: 中央日報 92. 12.26 記事와 92. 12.27. 韓國
經濟新聞 2面記事

게 對應할수 있는 態勢를 만들어 두는데 力點이 置中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萬一, 申告制를 採用하지 않았다 할것 같으면 類似한 施設을 行政當局이 掌握하지 않고 있지 않게 되어, 事故等이 發生한것과 같은 경우, 類似한 施設에 대한 警告나 指導等に 迅速한 對應은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結局, 事故等の 發生蓋然性이 높고 事故가 일어나면 돌이킬수 없는 것같은 施設等に 관해서는, 許可制等 實質的事前制型的 行政手段을 準備하여, 거의 그와같은 事故等이 일어날 可能性은 없는가, 또 發生하여도 큰일 나지 않을것 같은 경우에는 事前制은 形式的으로 充足되므로, 申告制等 形式的制型的 行政手段을 써서 單只, 非常時를 위해 如斯한 施設의 掌握을 行政當局에 施行해 두기위해 申告制가 採用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申告制는, 한편으로는 申告해도 形式的要件을 欠落(如)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受理되지 않으면 國民은 該當行爲를 適法으로 施行할수 없다는 意味에서는 事前制의 性格을 갖는 것으로 理解할수가 있다. 그것이 申告制의 基本的性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同一하게 事前制機能을 갖는 許可制等 다른 行政手段과 比較해 봤을 경우, 申告制는, 許可制等과 判異하여 實質的機能을 갖지않고, 形式的制機能만이 갖고 있으므로, 그行爲手段으로서의 機能(특히 經濟活動側面에서본 機能)上的 力點은 事前制機能보다도 그 存在를 行政當局

表 9. 申告制型式的 分類表

- | | | |
|-----|---|--|
| 申告制 | { | ① 身分·地位變動型 ……例: 戶籍, 住民基本台帳法上的 各種申告 |
| | | ② 形式的事前制型* ……例: 各種營業申告 |
| | | ③ 事實把握型* ……例: 各種施設設置申告
(形式的事前制은 當然前提) |

* 法律第 4501 號로 制定公布된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이 ②+③으로 合친 型에 屬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 事前에 把握해 두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쪽이 適切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以上の 諸要點을 念頭해 두고 申告制(受理行爲)를 分類하면, 다음表-9와 같이 세가지 型式으로 말할수 있는것도 可能的 것이다. 즉, 身分·地位變動型, 形式的事前制型과 事實把握型等이다.

註記: 4.2. 以下는 編輯紙面上事情으로 因해 省略한다.

5. 맺는말

92年末頃, 韓日間技術協力委員會組織이 其間 長時間 끌어 오다가 日本側이 出資金을 出捐하므로서 正式 發足하여 技術移轉을 우리側에 促進하는 마당에 와 있는데, 申告制에서 登錄制로 바뀐 賃金業法처럼 日本法을 模倣하고 있는 現實에서 왜 이와같은 立法思想은 導入되지 않고, 時代에 逆行하는 立法으로 法的訴訟對象의 素地를 많이 內包한 듯한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을 用協側이 立法推進하였는지 매우 안타깝게 生覺되며, (A)와 (B)兩法이 한 部處內에서 어떠한 運營의 妙를 살릴지 念慮가 되어 다음號에는 이 問題를 豫想시나리오 設定으로 檢討하여 볼 것이다.

舊技術士法이 1976年廢法된 后, 其間 16年間(法的受難) 壓迫과 설움에서(民主化로 因해) 解放된 民族의 노래歌詞와 같이 母法이 없는 孤兒身勢였으나, 인제는(1992年 11月 25日 技術士法制定公布后) 技術士會가 活氣찬 癸酉年에 心機一轉·勇氣百倍하여 日進月步아닌 秒進雷飛의 情報化時代에 神氣를 타고 旭日昇天과 같이 21世紀를 向해서 邁進합시다(1992. 12. 31 脫稿)

6.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 (R.(1) 玄岩社發刊 '92 法典
- (R.(2) 佐藤英善著「經濟行政法」 1032 面, 19

90. 4. 15. 成文堂發刊

(R.(3)編著者 淺野一郎「立法技術入門講座」
第1~4卷, 平成3年發刊

(R.(4) 1992. 11. 4. 國會通過(制定公布)「技術士法」과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R.(5)技術士會誌 92年 3, 4, 5, 6號等 其他
技術士會誌

(R.(6) 科技處에 意見書提出寫本

※ R-6

受信者住所: 京畿道 果川市 中央洞 1審地(第
貳政府綜合廳舍第貳棟)

受信者: 科學技術處長官(參照: 技術用役課)

題目: 技術用役育成法改正法律案인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立法豫告에 關한
意見書提出

參照: 科學技術公告 第91-28號(1991. 5. 8.
官報第11823號)

意 見 書

1. 이 立法豫告案은 根本的으로 違憲立法으로서 그 要點을 적으면 立法案全文 句句節節이 違憲條項이 許多하여 具體的으로 指摘하기도 前에 同第4條(엔지니어링 活動全体的 申告등)은 完全無缺한 違憲이다. 卽, 別添된 資料-1(各種·資格 및 業務法에 條文化된 登錄規程一覽)*과 같이 國內實定法 15個의 各種法律은 다 登錄制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2. 國際化·開放化의 美名下에 所謂 科技處가 立案推進하는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은 1991. 5. 23. 農水産部가 發表한 農水産物流通構造改善對策案에는 精肉店·糧穀商의 現行 營業許可制에서 申告制로 바꾼다는 것과 거의 같고, 인제는 韓國의 科學技術者 特히 技術士는 쇠고기·쌀장사와 같은 處地로 轉落格下되는 立法措置를 바라보게 되어 憲法精神(第11, 22, 127條등)에 逆行하는 時代를 맞볼듯하다.

3. 特히 同情이 가는일로서 違法設立된 (社)技術用役共濟組合을 合法的救濟回生시키기 위해 이 立法案은 改定하여 “엔지니어링技術振興共濟組合法案으로 고치는 것을 勸誘하며, 先進西歐各國이나 日本처럼 技術士法 하나만으로 科學技術革新과 尖端엔지니어링技術의 發達과 함께 經濟成長促進으로 軍事強大國인 美國이나, 經濟大國인 西獨 或은 日本을 直視觀察하시기를 再次喚起시키는 바입니다.

4. 仔細한 意見書의 條文別 說明은 不問可知로서, 最近 發刊된 '90, '91年의 技術士會誌에 掲載된 關聯記事를 보시는 것으로 充當코져 하나, 后日, 別途로 本會 或은 特委에서 資料를 送付코져 합니다.

有添: 1매(表-3과 거의 같다.)

(社)韓國技術士會 技術士法立法推進特委
前任幹事 金 岫 根 ㊦